#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4 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이양수・박준태・백종헌

이인선 • 박상웅 • 박정하

권성동 • 이철규 • 이종배

유상범 · 송기헌 · 한기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강원지역은 접경지역,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 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.

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, 강원자치도 설립 목 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 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, 농지, 산림, 환경, 해양,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

## 주요내용

- 가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 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 또는 매각·교 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의2 신설).
- 나.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확원된 것으로 봄(안 제50조).
- 다. 「농지법」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의 농지취득자 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(안 제53조 의2 신설).
- 라.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,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전전년도 발전판매(發電販賣)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·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금에 내도록 함(안 제57조의2 신설).
- 마. 도지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고,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(안 제69조의2 신설).
- 바. 강원자치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·고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, 해당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음 (안 제69조의3 신설).
- 사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

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 미터 안으로 할 수 있음(안 제69조의4 신설).

아.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2조).

##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보전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)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, 제17조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매각·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매각·교환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
- 2.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

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농지취득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농지법」 제6조제2항제3호

-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진역의 농지를 주말 •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
- ② 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,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 도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「농지법」 제23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는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2(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댐 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
  - 1.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  - 2.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 지사가 정하는 사업
  - ③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목적댐(이하 "다목적댐"이라 한다) 중 총저수용량 10억톤

이상의 다목적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(이하 "댐사용권자"라 한다)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 도 발전판매(發電販賣)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·공업용수 판매를 통 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 기금에 내야 한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57조의3(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 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
  - 2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사용료
  - 3. 발전판매(發電販賣) 수입금
 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,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편제2장에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- 제69조의2(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.
  - ② 도지사는 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본다.
  - ③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  - ④ 「어촌·어항법」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어행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·변경할 수 있다.
  -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「항만법」 제5조

-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⑥ 도지사는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69조의3(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) ①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  - ② 도지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·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 - ④ 도지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 역으로 지정·고시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
- 제69조의4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다.

제7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등은"을 "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,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협의업무 위탁 절차 등은"으로 한다.

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등에게 보호구역,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7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건물,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은 「국유재산법」을 따른다.

제4편제3장에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73조의2(국방·군사시설의 이전 지원)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국방·군사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

있다.

제73조의3(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 한으로 한다.

②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 호 및 제5조제1항·제4항·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	제42조의2(보전국유림 처분 등에
		관한 특례) 「국유림의 경영
		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		제4항, 제17조 및 제21조제1항
		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
		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
	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	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매
		<u>각·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</u>
		<u>수 있다. 다만, 매각·교환은</u>
		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		<u>한다.</u>
		1.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
		지구로 지정된 경우
		2.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
		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
		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
제50조(농업진흥지역 지정	등에	제50조(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
관한 특례) ① ~ ④	(생	관한 특례) ① ~ ④ (현행과
략)	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
		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「국토
		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률」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 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제53조의2(농지취득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농지법」 제6조제2 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진역의 농지를 주말・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

- ② 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, 제3 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강 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를 취 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「농지법」 제23조제1항제6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 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 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제57조의2(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금의 설치 등) ① 도지 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 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 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운용한다.
  - 1.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  - 2.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 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
  - ③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(이하"다목적댐"이라 한다) 중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(이하 "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(이하 "댐사용권자"라한다)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(發電販

- 賣)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・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100분의 20을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 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·운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로 정한다.
- 제57조의3(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강원 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해당 다목적댐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 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 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
  - 2. 「댐건설・관리 및 주변지역

    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

     조에 따른 사용료
  - 3. 발전판매(發電販賣) 수입금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, 시기 및 내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2(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장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하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

-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
   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

   로 본다.
- ③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1항 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 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- ④ 「어촌・어항법」 제17조제 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・변경할 수 있다.
-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⑥ 도지사는 북방한계선 인근 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

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 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9조의3(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) ① 「도시교통정비 촉진 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 사의 권한으로 한다.

- ② 도지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「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 ·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 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도 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

제70조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

<신 설>

시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 할 수있다.

제69조의4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다.

제70조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관한 특례) ① (현 행과 같음)

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에게 보호구역,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관할부대장은 <u>제1항</u>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건 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, 변경 또 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」에 따른다.

⑤ (생략)

제72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 법 등) ① ~ ③ (생 략) 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

<신 설>

<u>③</u>
<u>ठॅ</u> }
<u>.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
및 제
2항에 따른 보호구역, 비행안전
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
있어서의 협의업무 위탁 절차
<u> </u>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72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건물,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

<신 설>

 축조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기

 준 및 절차 등은 「국유재산 법」을 따른다.

제73조의2(국방·군사시설의 이 전 지원)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원 자치도에 국방·군사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국가는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3조의3(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공항소 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제 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다.

②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9호 및 제5조제1항·제4 항·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